

분실물(유실물) 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웨이브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여 분실물(유실물)의 효율적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실물(유실물)"이라 함은 웨이브파크 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
2. "분실자(유실자)"라 함은 습득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웨이브파크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지물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3. "분실물 접수"라 함은 웨이브파크 내 분실물(유실물) 습득자로부터 인수 받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반환인수"라 함은 웨이브파크에 접수된 분실물(유실물)을 분실자(유실자) 또는 습득물 소유자가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분실물(유실물)의 취급 원칙)

- ① 분실물(유실물)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분실/습득물의 종류, 습득 장소와 날짜, 시간을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입한다.
- ② 웨이브파크 내 에서 접수한 분실물(유실물)은 현장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에서 수합하여 분실물(유실물) 본인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분실물(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 인수증 작성 등을 하여 분실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분실물(유실물) 반환 인수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손님의 요청으로 방문 수령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분실물(유실물) 접수 시, 홈페이지 내 공시된 분실물(유실물) 착불 택배 요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이미지 첨부 확인을 통해 착불 택배 발송을 할 수 있다. 단, 파손 위험 물품이나 고가 물품의 경우 택배 발송 불가 원칙이나 손님이 운송 중 파손에 대한 면책 사항 및 배송 동의 시 발송을 할 수 있다. 단, 부피가 크거나 규격 박스 포장에 불합리한 경우 택배 발송이 제한될 수 있다.

④ 현장에서 분실물을 수령하는 경우 습득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인수증 서명 날인을 받고 물건을 반환한다.

⑤ 동일한 분실물(유실물)에 대하여 복수의 인원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택배 수령 후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현장 또는 비대면으로 복수의 인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쌍방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할 때까지 반환 인계를 보류할 수 있으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착불 택배를 수령한 신청자가 사후에 본인 물품이 아님을 확인하였을 경우, 서약한 동의서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을 지체없이 웨이브파크에 원상태 그대로 반환(반송)하여야 한다.
3. 특정인에게 물품이 반환인수된 이후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반환된 물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회수나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객관적 증빙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거나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단, 잘못 수령해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제 2 호 및 제 3 조 제 2 항의 인수 책임 원칙을 준용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분실물(유실물) 접수

제 4 조 (분실물(유실물) 접수)

웨이브파크 내에서 물건을 유실하였을 경우 웨이브파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분실물 센터' 에 게시된 분실물(유실물)을 분실자(유실자)는 확인 후 문의한다.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할 경우는 서비스운영팀에서 직접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 3 장 분실물(유실물) 공지

제 5 조 (분실물(유실물) 공지)

- ①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 담당자는 접수한 습득물을 웨이브파크 홈페이지 고객센터 분실물 센터 내에 습득한 날로부터 최대 6 개월간 공지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가 입력된 습득물(신분증, 신용카드 등), 고가물품, 귀중품 등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타인 반환 방지를 위해 정보 일부만을 작성하여 분실물 센터 내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제 4 장 분실물(유실물) 처리

제 6 조(소유권 상실)

민법 제 253 조를 준용하여 분실물(유실물)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실물(유실물)을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분실자(유실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 7 조(긴급처리를 요하는 분실물(유실물))

①다음의 각 호의 물품은 위생 관리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습득 즉시 폐기하며, 별도의 관리 대장 기록 및 홈페이지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음식물(개봉여부불문)
2. 인화물질
3.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4. 젖은 의류, 수건, 수영모 및 모자류 등 습기나 오염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 또는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
5. 범죄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
6. 일회용품성 물품(개인 세면도구, 방수팩 등)
7. 대량 발생하여 보관이 불가능한 구매가 1만원 미만의 저가의 물놀이 용품 또는 파손된 튜브 등
8.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분실물 센터 내 공지 후 7일 이내에 소유자의 확인 문의가 없는 물품 중, 하절기 온도, 습도 상승에 따른 부패 및 변질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 1 항에 해당하는 각 호의 물품은 부패, 악취, 해충 발생 등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거나,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 예고 없이 즉시 처분한다. 이는 시설 이용객 전체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이에 따른 별도의 보관 및 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고객이 분실물을 확인하고 수령 의사를 밝혔더라도,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위생 및 보관 관리상의 사유로 최대 7 일까지만 보관하며, 기한 내 미방문 시 별도 통보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제 8 조(분실물(유실물) 공지기간 만료 후의 처리)

① 보관기간이 6 개월 경과된 반환되지 않은 분실물(유실물)은 웨이브파크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내에 처리 완료로 진행하고 종류별로 나누어 폐기 전 물품으로 분리 보관하고, 기간은 30 일 간 보관한다.

② 폐기처리는 연 2 회 9 월, 12 월로 정한다. 다만, 폐기 처리해야 하는 물품의 기간이 다른 경우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 부서장의 재량 하에 보관기관이 만료된 분실물(유실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7-8 월)중 7 일 이상 소유자의 문의가 없는 물품의 경우 주 단위로 성수기 집중 관리 주간을 운영하여 즉시 처분할 수 있다.

제 9 조(처리방식)

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가까운 기부처'에 기증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모두 폐기한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우산은 우산대여서비스를 위하여 웨이브파크 내에서 보관한다.

② 핸드폰, 고가 물품 및 귀금속의 경우 30 일 간은 웨이브파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며 이후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한다.

③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 신분증 및 신용카드는 발행기관에 문의한 후 폐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며, 폐기 처리 시, 조치사항을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도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폐기한다.

④ 웨이브파크 특성 상,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서핑 보드류 등 용품의 경우에는 공지 후 웨이브파크에서 자체 폐기 혹은 사내 기증한다.

부 칙 (2024.3.26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여름철 분실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2026.03.25)

제3조 (개정 시행일)

본 규정은 복수 인원의 소유권 주장 발생 시 반환 인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2026.06.25)